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4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 김위상 · 박충권 · 김선교

임이자 • 고동진 • 김형동

김성원 • 구자근 • 강대식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희롱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효과도 낮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제13조의3).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 ④ (생 략)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5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13조의3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3조의3(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
	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